

대구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54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54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198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F

변론 종결 2017. 8. 17.

판결 선고 2017. 8. 3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19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41,191,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1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1 내지 10,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아래 표 중 '보증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구분'란 기재와 같이 '제○약정'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 C, D은 A가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대출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출금액	200,000,000원	500,000,000원

대출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주채무자	A	
연대보증인	B, C, D	
보증번호	404060091	404080179
보증원금	170,000,000원	425,000,000원(382,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일자	2006. 3. 31.	2008. 5. 28.
보증기한	2007. 3. 30.(2014. 3. 28.로 변경됨)	2009. 5. 28.(2014. 5. 23.로 변경됨)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 발생

A에 관하여 2013. 10. 17. 그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중 '대위변제일' 기재 각 일시에 '대위변제금' 기재 각 금액을 '대출은행'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하여 2013. 11. 27.경 합계 1,399,004,79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주채무자	A
대출은행	대구은행
사고일자	2013. 11. 27.
대위변제일	2013. 11. 27.
대위변제금	170,730,208원
회수액	1,170,730원
대위변제잔금	169,559,478원
확정손해금	384원
체당금	792,051원
소계	1,399,004,793원

다. 피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A 대표이사 B의 형수이고, G는 피고의 딸이자 B의 조카로서 2006. 1. 경부터 2013. 2. 21.까지 A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2.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A의 사원용 기숙사였는데, G의 남편 H이 2010. 10. 5. 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년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H은 위 전세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3. 7. 30.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뒤,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은 H이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지급을 갈음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H이 지급하였으며, 10,000,000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라. A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보유한 적극재산은 합계 3,712,962,534원에 불과한 반면, A의 소극재산은 합계 6,670,723,421원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미시 I에 있는 J 제1동 제2001호(이 사건 아파트)	58,000,000원	대구은행	4,375,450,809원
구미시 K아파트 제106동 제1106호	188,000,000원	국민은행(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2507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구상금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2,133,073,605원
구미시 L 공장용지 19211 m ²	2,289,870,000원	우리은행	13,808,800원
구미시 M 공장용지 624 m ²	구미시(자동차세, 재산세 등)	18,836,610원	
구미시 N 공장용지 982 m ²	국민건강보험공단	45,909,880원 ¹⁾ 2013. 4. ~ 7. 체납 건강보험료 15,069,610원 + 2013. 6. ~ 7. 체납 연금보험료 7,190,210원 + 2013. 4. ~ 7. 체납 고용보험료 6,788,180원 + 2013. 4. ~ 7. 체납 산재보험료 16,861,880원.	
위 각 공장용지 지상 단층공장 2채	11,486,500원	O(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위 각 공장용지 지상 제1 내지 3동, 제5 내지 8동, 제10 내지 12동, 제14동 공장건물	448,268,420원	P(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Power Press (KS-200) 외 기계 32대	716,972,000원	Q(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R 대 633m ² 중	362,216원 ²⁾ 633m ² ×	S(퇴직금)	2,651,540원

구미시 I에 있는 J 제1동 제2001호(이 사건 아파트)	58,000,000원	대구은행	4,375,450,809원
180분의 1 지분	103,000원(2013. 1. 1. 기준 ㎡당 개별지가) × 1/180.		
제주특별자치도 T 대 7㎡ 중 180분의 1 지분	3,398원3) 7㎡ × 87,400원(2013. 1. 1. 기준 ㎡당 개별지가) × 1/180.	U (임금 및 퇴직금)	2,566,620원
		V(임금 및 퇴직금)	5,365,826원
W(임금 및 퇴직금)	6,146,981원		
구미시(근로소득세)	3,495,240원		
X	3,417,510원		
H(전세보증금)	25,000,000원		
소계	6,670,723,421원		
소계	3,712,962,534		

마. 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3. 19. 채권최고액 20,8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8. 6.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808,8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아직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①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②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3. 11. 8.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으며, ③ 그 후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의 사해행위

1)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러한 A의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이 사건 아파트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A의 재산상태, 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채무자인 A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액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아파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가 2013.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바 제3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8,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4. 20.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바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전부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 내지 금융비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H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2013. 7. 30. A 명의가 아닌 A의 대표이사 B의 개인 명의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H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A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피고는,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으로 기존 채권자인 한국전력공사, 직원 AB, 거래업체 AC 등에 대한 채무를 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바 제21, 28호증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A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위 A의 예금계좌에서 2013. 8. 5.부터 2013. 8. 7.까지 한국전력공사에 5,011,050원(전기요금), AB에게 600,000원, AC에게 2,736,910원(6월분 AD), 인터넷 대출이자로 411,391원, 주식회사 아워홈에 171,500원(6월 분식대) 등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예금통장 사본에 기재된 각 출금명목에 의하면,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이 A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 내지 금융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정이 그와 같더라도 그 합계 금액은 8,930,851원(5,011,050원 + 600,000원 + 2,736,910원 + 411,391원 + 171,5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

③ 피고와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은 H이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동액 상당의 전세보증금 지급과 같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H이나 G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A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의 지급과 같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H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사실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가 된다.

④ 위 8,930,851원 채무 이외에는 A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였다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 내지 금융비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딸인 G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시가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이지만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위인 H이

지급하였고(피고는 실제 매수인이 H와 G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2010. 10.

5.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H와 G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② A의 대표이사인 B는 피고의 형수이자 G의 작은 아버지로서 이들이 서로 상당히 가까운 친척 관계인 점, ③ 한편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전입신고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A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위 보증금을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된 점, ④ 반면, H과 G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10. 17. A는 그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고 2013. 11. 7. 폐업신고를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의 범위는 아래 3.항과 같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013. 8. 6.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808,800원이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4. 20.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41,191,200원(55,000,000원 - 13,808,8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H은 2017. 6. 12. 전입신고를 마쳐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H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바 제31,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던 H이 2017. 6.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의 지급을 H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과 같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그때까지 H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획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H과 A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과 A 사이의 전세계약이 현재까지

존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A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채무 내지 대출채무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변제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41,191,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1,1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판결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손병원

판사정성욱

별지

1) 2013. 4. ~ 7. 체납 건강보험료 15,069,610원 + 2013. 6. ~ 7. 체납 연금보험료 7,190,210원 + 2013. 4. ~ 7. 체납 고용보험료 6,788,180원 + 2013. 4. ~ 7. 체납 산재보험료 16,861,880원.

2) $633\text{m}^2 \times 103,000\text{원}(2013. 1. 1. \text{ 기준 } \text{m}^2\text{당 개별지가}) \times 1/180$.

3) $7\text{m}^2 \times 87,400\text{원}(2013. 1. 1. \text{ 기준 } \text{m}^2\text{당 개별지가}) \times 1/180$.